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38
----------	-------

제출년월일 : 2013. 5.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2013. 4. 1. 시행)에 따라 조례에 관허사업 제한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15조)
-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기 10일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규정 추가
(안 제51조 제5호 신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전반)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13. 4. 18. ~ 5. 8)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관련조문	평가기준	검토 결과	조치 결과
• 제50조(심사의결)	이해충돌 가능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권고)	미반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0조(위원의 제척 등)에 이해충돌 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가 규정되어 있음
• 제51조 (위원의 해촉)	이해충돌 가능성	위원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 미흡(권고)	반영(제51조제5호 신설)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라. 2013년 제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3.5.14)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0조 후단 중 “통신일부인을 날인받아”를 “접수인을 날인 받아”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전단 중 “일시”를 “한꺼번”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일시”를 “한꺼번”으로 한다.

제28조 중 “3월”을 각각 “3개월”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5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u></p> <p>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시행에</u> ----- -----.</p> <p>제3조(적용) ----- -----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 ----- -.</p> <p>제7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 ----- <u>시행에</u> ----- -----.</p> <p>제10조(보통우편 송달부) ----- ----- ----- ----- -----.</p>

송한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을 날
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
조에 따라 구청장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
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
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
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 접수인
을 날인 받아 -----
-.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① 법 제
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
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
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
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
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
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
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무관청이 법 제
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
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

----- 한꺼번-----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한꺼번-----
-----.

제28조(구세확정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구세확정전 보전압류) --

----- 3개월 -----

----- 3개월-----

-----.

제29조(수색) ①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 ①-----

----- 2명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1조(위원의 해촉) -----

-----.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신 설>

5. 영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국 세무1과 이석우
연 락 처	02-3153-8702